

사업시행권 포기각서

주식회사 테일리펀딩대부(아래 기재된 대출약정에 명시된 대주를 말하며,
대출약정상의 대주의 지위 및 대출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가 양도된
이후에는 그 양수인을 말함) 귀중

본 포기각서는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197-3 외 21필지(이하 포괄하여 “본건 사업부지”) 지상에 타운하우스(이하 “본건 건물”)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차주로서 주인(이하 “차주”), 대주로서 주식회사 테일리펀딩대부(이하 “대주”), 연대보증인으로서 조 등 사이에 2018년 8월 10일자로 체결되는 대출약정(서)[이하 “대출약정(서)”이라 하며, 이후 변경 또는 수정된 약정을 포함]과 관련됩니다.

본 포기각서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는 본 포기각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출약정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대출약정의 목적 및 본건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1) 당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본건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이하 “포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대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대주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사업인수인”)에게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권(당사가 본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보유하고 있거나 장차 보유하게 될 일체의 권리 및 권한을 말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이하 “사업시행권”) 및 본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당사가 보유하는 유치권의 행사를 포기하여 사업시행권을 조건 없이 이전할 것이며, 대주의 위와 같은 서면 통지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권은 자동적으로 사업인수인에게 이전하여 본건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때, 당사는 사업인수인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권의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절차(본건 사업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사업주체·건축주의 변경, 본건 사업 관련 인허가권 이전 등)를 이행하고, 본건 사업 관련 모든 권리, 권한, 지위를 사업인수인에게 이전할 것이고, 이와 관련

간이 정해져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의 종료 전까지 차주는 새로운 인감증명서의 교부 등 해당 서류의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6) 아울러, 본 포기각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첨부 양식에 의거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와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를 귀사에 제출하고, 차후 새로운 사업주체와 건축주를 정하여 위 동의서에 보증기재할 권한을 취소불능조건으로 대주에게 부여합니다.

(7) 당사는 본 포기각서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이의, 보전처분, 소송 등 일체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아니하며, 보전처분, 소송 등 절차에서 의무이행을 부인하거나 감액을 주장하거나 의무이행의 효력 등을 다투는 제반 주장을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8) 본 포기각서에 따라 당사가 사업시행권을 포기하는 경우, 당사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등 비용의 정산은 피담보채무가 상환 완료된 이후에 행하기로 합니다.

(9) 당사는 본건 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조건사항 미이행으로 인하여 본건 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이 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10) 본 포기각서에 따른 당사의 사업시행권 등 권리의 포기는 대출약정의 모든 당사자, 대출원 ~~한국은행~~을 위한 새로운 대출금융기관, 본건 사업부지 및 ~~본건~~ 건물의 양수인 및 위 각 당사자들의 포괄 또는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구속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1.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1부
2.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1부

2018년 8월 10일

각 서 인 :

주식회사 알 (법인등록번호: 134311-)

경기도 양평군

대표이사 조

